

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5.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
6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
7. 부패방지법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이 경우 공공기관 이외 재적 범죄를 포함한다.<신설 2018.12.03.>
8.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<개정 2017.12.03.>